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2013노1276]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나희석(기소), 진철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정41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 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러한 이유로 무죄로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 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7/ 80 7 66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러한 이유로 무죄로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 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러한 이유로 무죄로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러한 이유로 무죄로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학교 직원 공소외 3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사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대표임을 밝혔으며, 허위학력 기재가 확인되면 공소외 1은 동대표에서 해임될 수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기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학적조회회신공문을 보낸 것만으로 동대표선거를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법률이 공공기관에게 처리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7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에게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 7가지 공개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의 공개사유인 아파트 동대표선거는 위 7가지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검색도 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소극 정보도 동법이 정한 처리정보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이△△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1. 4. 21.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을 예비적 죄명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대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압구정동)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 등을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의 1차 회신서(수사기록 제10쪽)에는 수신인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공소외 1의 이력서(수사기록 제80쪽)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학교 담당직원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력서와 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 대신한다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자로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학교의 경우 첨부된 공소외 1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수사기록 제9쪽)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필이 날인되어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으로 공소외 1의 허위학력 기재 여부를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의무를 부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일 뿐인 점, ②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10조 위반을 명시적으로 전 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구 법률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기록을 열람하다가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속여 처리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대학교의 정보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주위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 나)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처리정보'란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하여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이 사건 구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호),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제4호),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구 법률 제23조 제3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이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에 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